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0. 13 선고 2020가단145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6. 7 선고 2021나33173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0. 13 선고 2020가단1451 판결

전 문

원 고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원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홍영표, 최정경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1. 9. 29.

판 결 선 고 2021. 10.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강릉시 D 전 407㎡에 관하여, 피고와 E 사이에 2019. 6.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E에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6. 10. 접수 제215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 1) 원고 A는 망 F의 배우자로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원고 B은 그 자녀이다. 한편 소외 E은 망 F의 큰형이고, 피고는 E과 망 F의 동생이다.
- 2) 원고들은 2013년경 망 F이 사망한 후에도 망 G의 어머니 및 E과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였다.

나. E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 1) E은 2016. 5.에서 같은 해 8.경 사이 야간에 강릉시 H에 있는 주거지에서 원고들이 함께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손으로 원고 A의 가슴과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고, 2018. 10. 26.부터 2019. 1.경 사이 오전에 위 주거지 거실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 원고 A의 뒤로 다가가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것이냐, 오늘 그 남자랑 몇 번째 하는 것이냐”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원고 A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고 왼손으로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 2) E은 2017. 1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원고들이 함께 잠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원고 B이 잠들어 있는 이불 위에 서서 바지를 내리고 원고 B의 머리와 얼굴을 향하여 소변을 보는 행위를

하였다.

3) E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원고 A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원고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원고 A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고합26,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노156, 대법원 2021도2997].

다. 원고들의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 원고 A는 E의 위와 같은 강제추행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청구금액 2,000만 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가단20285호로 당시 E 소유의 강릉시 D 전 4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9. 6. 4.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2) 그 다음 원고 A는 E을 상대로 이 법원 2020가단32943호로 위 강제추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E으로 하여금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와 E이 모두 항소하였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나33121).

3) 또 위에서 본 원고 B에 대한 아동학대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E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가단1291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 B에 대한 위자료 700만 원, 원고 A에 대한 위자료 1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원고들만 항소하였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나30228).

라. E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

E과 피고는 2019. 6.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6.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관련사건에서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 확정

1) 원고들과 I, J은 피고와 E, K, L을 상대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느합3호 망 M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위 법원은 2021. 7. 15. 당사자들의 최종 상속분액, 상속재산의 현황과 기여도, 당사자들의 관계,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청구금액과 인용금액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상속인 M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상대방 C의 소유로 분할한다.

2. 상대방 C은 청구인 A에게 35,000,000원을 2021. 8.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

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청구인 A가 상대방 C으로부터 제2항 기재 돈을 지급받으면,

가. 청구인 A는 지체없이 상대방 E에 대한 이 법원 2020나33121호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소를 취하하고 상대방 E은 이에 동의한다.

나. 청구인 A, B은 지체없이 상대방 E에 대한 이 법원 2021나30228호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소를 취하하고, 상대방 E은 이에 동의한다.

다. 청구인 A는 이 법원 2020가소1882호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상대방 K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향후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

4.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은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피상속인 망 M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사, 가사, 형사 등 일체의 청구(유류분반환청구 포함)를 하지 않는다.

3) 위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21. 8. 30. 원고 A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의 주장

E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 원고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것에 대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E에 대하여 위 기초사실 나.항 기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일인 2016. 5.경부터 2019. 1.경 사이에 성립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일응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보전채권의 소멸

그러나 그 후 위 기초사실 마.항과 같은 강제조정결정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 A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채권이 소멸한 사실은 원고들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제5차 변론기일), 결국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인 원고들의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원고들의 추가 피보전채권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A가 E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가소909호로 제기한 바와 같은 별도의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가소909호로 E을 상대로 하여 평소 지적장애가 있는 원고 A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여 5,944,921원의 돈을 갈취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법원은 2021. 9. 15. E이 원고 A의 돈을 갈취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다만 이에 대하여 원고 A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A가 E에 대하여 금전 갈취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결국 원고들이 원래 주장하던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고, 추가로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보전채권의 소멸 경위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판사 이우희